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116호

2020. 9. 2.

건명	논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안연월일	2020. 8. 25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8. 25.

## 보 고 내 용

### 제안이유

- 논산시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 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, 적용범위(안제1조 ~ 제3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4조)
- 재정지원 및 지원제외(안 제5조 ~ 제6조)
-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취소·환수(안 제7조 ~ 제8조)

###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22조,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,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